

경기도 공고 제2026 - 6099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23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삼원디앤씨 (최용선)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28, 2층 (신흥동)	건축공사업 (10-3004)	영업정지 5개월 (2026.10.01.~ 2027.02.28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(2026.06.16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3호